

윤리실천 특별약관

제1조 목적

본 약관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주식회사 바이오에프디엔씨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)과 거래상대방(이하 “상대방” 이라 한다)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거래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적용 범위

본 약관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회사와 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.

제3조 준수 의무

3-1. 회사의 임직원은 본 약관이 적용되는 상대방과의 모든 거래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본 약관을 준수하여야 하며,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상대방에게 본 약관을 제공하여 이를 숙지하게 한 후 상대방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 받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.

3-2. 상대방은, 회사의 윤리경영의지를 이해하고, 본 약관의 윤리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,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회사의 3.1항 소정의 확인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3-2. 상대방은 “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등의 취득 및 제공 금지”를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조 위반 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

4-1. 상대방은 거래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.

4-1-1호. 3-3항을 위반하여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발주자, 수급인, 하수급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하는 행위

4-1-2호. 회사,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제외한 선물, 상품권, 또는 현금 등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

4-1-3호. 회사,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식사, 주연(酒宴), 사행성 오락 등의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

4-1-4호. 회사,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교통, 숙박, 관광, 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

4-1-5호. 회사,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에게 금전대차, 대출보증,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또는 부동산 거래행위

4-1-6호. 기타 : 4-1-2 내지 4-1-5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가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

4-2. 4-1-2호 내지 4-1-4호의 ‘통상적인 수준’ 이라 함은 사회 일반의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보편타당한 수준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가지지 않고 업무를 공정히 처리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.

4-3. 회사는 상대방이 4-1항 각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반의 정도에 따라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위반정도	제재 내용
4-1-1호의 행위에 의해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	회사와 일체의 거래를 중단(입찰참여 배제, 낙찰취소 및 등록취소 등)할 수 있고, 회사와의 모든 거래/계약을 해제/해지함과 동시에, 그로 인하여 회사에 발생한 직, 간접적인 손해에 대하여 배상
4-1-2호 내지 4-1-6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경우	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/계약의 낙찰취소, 해제/해지
4-1-2호 내지 4-1-6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2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의 경우	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/계약 및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/계약과 유사한 거래/계약의 낙찰취소, 해제/해지
4-1-2호 내지 4-1-6호의 행위로 인하여 회사 또는 회사의 직원이 아닌 자로서 회사로부터 그 권한 내지 용역을 위임 받은 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	회사와의 모든 거래/계약의 낙찰취소, 해제/해지
<p>4-4. 4-3-3호의 ‘유사한 거래 또는 계약’ 이하 함은 4-1항 각호의 행위와 관계가 있는 당해 거래 또는 계약과 그 대상 및 유형이 동일하고, 동시에 회사의 계약 팀이 동일한 거래 또는 계약을 말한다.</p> <p>4-5. 4-1-2호 내지 4.1.6호의 항응, 접대, 편의제공, 금전대차, 대출보증 등의 경우 4-3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.</p> <p>4-6. 4-3항을 적용함에 있어 ‘재산상 이익의 가액’은 횡수, 기간,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 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.</p> <p>4-7. 회사는 4-3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긴급을 요하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.</p> <p>4-8. 상대방은 4-1항 각호의 행위로 인하여 제재를 받은 경우에 회사뿐만 아니라 태영그룹 계열사와의 거래 또는 계약에도 제재를 받을 수 있다. 단, 제재의 내용 및 수준은 회사의 제재 결과와 동등한 수준으로 적용한다.</p>	

제5조 공정거래

- 5-1. 윤리규범 실천과 관련하여 회사는 필요한 경우 계약 대상자와 사전협의 및 비밀엄수 원칙하에 계약 대상자에게 관련 자료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계약 대상자는 이에 적극 협조 한다.
- 5-2. 비윤리행위에 대해 자진 신고하는 경우 “비윤리행위 신고자 보호, 보상 및 면책지침”에 따라 면책 및 보상한다.

제6조 시행일

본 약관은 2022. 12. 22부터 시행한다

제7조 경과조치

본 약관은 이미 체결 또는 개시되어 이행 중에 있는 계약 또는 거래 관계에 있어서는 상대방이 본 약관에 서명·날인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.